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38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조배숙 · 성일종 · 이인선
김미애 · 조정훈 · 서일준
나경원 · 임종득 · 유상범
곽규택 · 박수영 · 김대식
윤영석 · 이상휘 의원
(14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12. 31.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후 낙태와 살인의 경계에 대한 국민의식이 모호해지고, 타인의 생명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태아의 생명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인

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태아도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상담의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는 등 생명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에 ‘태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추가하고, ‘태아’를 ‘수정된 수정체가 모체의 자궁에 착상된 후 심장박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3호 신설).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태아’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
- 다.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라.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한 교육과 홍보,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신설함(안 제7조의3 신설).
- 마.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의 목적을 정함(안 제7조의4 신설).
- 바.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5 신설).
- 사. 임신 유지·종결 상담의 현황 및 임신중절수술의 통계관리(안 제

11조의6제2항제8호·제9호 신설)

- 아.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2조 삭제).
- 자.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고, 허용한계에 대한 제1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함(안 제14조).
- 차.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만 18세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낙태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대사실 입증시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카.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 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의 경우 미리 신청을 받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지정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및 제26조제4항 신설).
- 파. 국가가 고위험 임신부 집중치료 시설·장비 지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5호).
- 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를 “태아(胎兒), 영유아”로 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태아”란 수정 후 자궁 내 착상하여 임신부 자궁 내에서 심장박동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유아의”를 “태아 및 영유아의”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2. 제7조의3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원 및 종사자 교육
3. 임신·출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임신·출산 지원 및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정책분석 및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의3(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출산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이하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피임 등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임신·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지원
4.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
5. 그 밖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제7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임신·출산 관련 상담의 목적 등) ① 제7조의3제1항제4호에서 하는 상담(이하 “임신 유지·종결 상담”이라 한다)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신의 지속을 위하여 여성을 격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은 임신 유지·종결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는 경우 임신 유지·종결 상담사실확인서(이하 “상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상담원 등의 자격 등) ① 임신 유지·종결 상담을 하는 사람은 의료, 법률,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장 또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6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신 유지·중절 상담의 현황 및 상담사실확인서 발급현황에 대한 정보

9. 기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임신 22주일 이내인 태아에 대하여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임신한 여성 본인(임신한 여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료법」 제24조의2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낙태가 예정된 시점의 태아의 임신주수
2. 심박동의 존재사실 및 여성본인의 초음파 시각적·청각적 확인 사실
3. 제안된 낙태방법과 연관된 의학적 위험 및 임신 유지시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위험
4. 제안된 낙태방법에 대한 설명 및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5.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계획임신 등의 사항

②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와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수술할 수 있다.

③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대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기타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와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수술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
2.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
3.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4.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서
5.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④ 임신·출산 상담기관의 장 또는 임신한 미성년 여성 본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원 등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의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한 여성 본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

다.

제14조의3(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 누구든지 해당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인공임신중절수술 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 기관을 미리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통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신생아”를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로 한다.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 본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태아(胎兒), 영유아-----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13. “태아”란 수정 후 자궁 내 착상하여 임신부 자궁 내에서 심장박동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신설></u>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태아 및 영유아의-----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중앙 임신·출산 지원 기관의 설치·운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신 설>

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2. 제7조의3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원 및 종사자 교육

3. 임신·출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임신·출산 지원 및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정책분석 및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의3(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출산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이하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 설>

2. 피임 등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임신·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지원

4.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

5. 그 밖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제7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임신·출산 관련 상담의 목적 등) ① 제7조의3제1항제4호에서 하는 상담(이하 “임신 유지·종결 상담”이라 한다)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신 설>

건강을 보호하고, 임신의 지속을 위하여 여성을 격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은 임신 유지·종결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는 경우 임신 유지·종결 상담사실확인서(이하 “상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상담원 등의 자격 등)

① 임신 유지·종결 상담을 하는 사람은 의료, 법률,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장 또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③ ~ ⑤ (생략)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

1. ~ 7. (현행과 같음)

8. 임신 유지·종결 상담의 현황 및 상담사실확인서 발급현황에 대한 정보

9. 기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통계를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① -----임신 22주일이내인 태아에 대하여 다음---

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
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
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 ① 의사
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임
신한 여성 본인(임신한 여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또
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임신
한 여성의 법정대리인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료법」 제24조의2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낙태가 예정된 시점의 태아
의 임신주수

2. 심박동의 존재사실 및 여성

본인의 초음파 시각적·청각적 확인사실

3. 제안된 낙태방법과 연관된 의학적 위험 및 임신 유지시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위험

4. 제안된 낙태방법에 대한 설명 및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5.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계획임신 등의 사항

②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와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수술할 수 있다.

③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대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기타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

동 의 와 상 담 사 실 확 인 서 만 으 로 수 술 할 수 있 다.

1.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결과 보고서

2.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3.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4.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서

5.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 명령결정서

④ 임신·출산 상담기관의 장 또는 임신한 미성년 여성 본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원 등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의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을 때 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한 여성 본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기명

<u><신 설></u> <u><신 설></u>	<u>날인을 받아야 한다.</u> <u>제14조의3(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 누구든지 해당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제14조의4(인공임신중절수술 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 기관을 미리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통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u>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의2에 따른 <u>신생아</u> 집 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 비 6. ~ 9. (생 략) ② (생 략) 제26조(벌칙)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② · ③ (생 략)	5. -----<u>고위험 임 산부와 신생아</u>----- ----- 6.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제27조(과태료)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 본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자</u> ② · ③ (현행과 같음)
--	--